

「2025년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」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

경상북도와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·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재직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「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5년 6월 5일

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

I 사업개요

- 사 업 명: 2025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
- 신청기간: 2025. 6. 5.(목) ~ 6. 27.(금)
- 신청방법: 온라인 접수(<https://gbwork.kr>)
- 지원규모: 52명 ※ 시군별 모집인원 아래 참고

시 군	모집인원(명)	시 군	모집인원(명)
포항시	-	청송군	1
경주시	4	영양군	-
김천시	2	영덕군	1
안동시	6	청도군	-
구미시	12	고령군	-
영주시	-	성주군	1
영천시	2	칠곡군	-
상주시	4	예천군	-
문경시	3	봉화군	2
경산시	7	울진군	3
의성군	2	울릉군	2

- 지원내용: 2년 만기예금, 960만원+이자+축하금(120만원)
 - 청년 적립금 480만원(매월 20만원, 총 24회 적립)
 -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(분기당 120만원, 총 4회 적립) 지원
 - 결혼축하금 120만원(단,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)

II

신청자격

※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

- ☐ (연령) 19세 이상 39세 이하(2025. 1. 1. 기준)
- ☐ (결혼여부) 미혼
- ☐ (주소)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(사업공고일 기준, 사업기간 동안 유지)
- ☐ (임금)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%(3,588,020원) 이하인 자
- ☐ (근무) 거주지(주민등록) 내 중소·중견기업*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,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(사업공고일 기준, 사업기간 동안 유지) ※ 기업당 3명 이내 선발

-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·중견기업
- *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 소재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

☐ 제외대상

- 사랑채움사업 기참여자 또는 중앙부처, 지자체 유사사업(자산형성 지원)*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
 - ※ 반환, 철회 등으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
 - * 청년내일채움공제,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
-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중이거나 지급받았던 자
-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타 지원사업 참여자
 - ※ 공고일 전 참여완료(사업종료)된 경우 신청 가능
-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(행복카드, 청년애꿈 등)에 참여 중인 자
 - ※ 공고일 전 참여완료(사업종료)된 경우 신청 가능
-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

-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|
| •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| 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|
| • 현역 및 보충역(군인, 사회복무요원, 전문연구요원, 산업기능요원 등) | |
| • 국가근로장학생(한국장학재단) | • 금융거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|

○ 아래 제외(제한) 기업에 근무 중인 자

제외(제한) 기업

- ① 소비·향락업
 -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 제5호의 ‘청소년유해업소’
 - 「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」 제2조
 -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」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(복권발행업, 현상업, 회전판 돌리기업, 추첨업, 경품업 등)
- ②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
 -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: 어린이집, 관리사무소 등
 - 비영리법인 및 단체, 조합, 협회: 「민법」·「특별법」에 따른 종교법인, 의료법인, 학교법인, 사회복지법인, 재단법인, 비영리특별법인 등
 -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‘외국 법인’
- ③ 3개월 미만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
- ④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
 -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무도장 운영업
- ⑤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공기업 등
- ⑥ 「초·중등 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

○ 경상북도 및 시·군, 진흥원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
III

신청방법

※ 서류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신청기간: 2025. 6. 5.(목) ~ 2025. 6. 27.(금) 18:00
- 신청방법: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(<https://gbwork.kr>)
- 신청절차 ※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(③ ~ ⑧)만 유효하게 인정

단 계	신청서류	세부 내용
1단계	참가자 신청 자격 확인	
2단계 (필수제출)	① 사업 참여 신청서	- 신청서 상의 모든 내용 기재 필수 - 자필서명 또는 날인 필수 - 양식 붙임 파일 참조
	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	
	③ 주민등록초본	- 경상북도 거주 확인 -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,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※ www.gov.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
	④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- 미혼 여부 확인 -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※ efamily.scourt.go.kr 발급
	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	- 출신 학교에서 발급
	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- 직장가입자, 전체이력(국민건강보험 발급)
	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	-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, 중위소득 확인 (국민건강보험 발급)
	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	-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-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※ www.4insure.or.kr 발급
	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(사진 또는 캡처)	-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, 급여 확인 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※ 민원서비스→서비스 찾기→보험료 조회→직장 보험료 조회→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
	⑩ 근로계약서	- 근로시간 및 입사일자, 급여 등 확인
해당 시 제출	⑪ 사업자등록증	-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·중견기업 확인 ※ 근무처에서 발급, 유효기간 확인 필수
	⑫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	- 중소기업확인서 문의(sminfo.mss.go.kr) - 중견기업확인서 문의(mme.or.kr)
	취약계층 관련 확인서류	-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 등
최종 선정 후 적립금 납입		

Ⅳ 대상자 선정

□ 선정방법

- (1차 서류심사) 자격요건 충족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선정 적격성 심사
- (2차 선정심사)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

□ 평가방법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업 종	제조업 [15점], 기타 업종 [10점]	15점
학 력	고졸 이하 취업자 [25점], 대졸 이상 취업자 [20점]	25점
월 소득	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[30점] 기준중위소득 100% 초과 ~ 120% 이하 [25점]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 ~ 150% 이하 [20점]	30점
근무기간	근무개월() × 0.833 = ()점 ※ 30점/36개월(3년) = 0.833	30점
합 계		100점

※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

구 분	중위소득 100%	중위소득 120%	중위소득 150%
월급여	2,392,013원	2,870,416원	3,588,020

※ 취업취약계층 가점(5점)

※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함

- ① 입직시기가 빠른 자
- ② 월 급여가 낮은 자
- ③ 고졸 취업자

□ 선정결과: 2025. 7. 18. 이후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안내

- ※ 일정은 운영 및 진흥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- ※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
- ※ 최종선정자가 참여를 포기할 경우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후보순위자로 대체할 수 있음

V 적립 및 지급방법

□ 적립방법

○ (청년 적립금) 매달 20만원, 2년 동안 총 480만원 납입

※ 첫 달은 지정한 날짜에 납입하며, 이후 매월 20일 이전 희망 날짜에 자동 이체(필수)를 통한 납입

※ 감액 또는 추가 납입 불가

○ (지자체 지원금) 분기별 120만원, 1년 동안 총 480만원 납입

< 월별 적립방식 >

(단위: 만원)

구 분	3개월차	6개월차	9개월차	12개월차	24개월차	금 액
합 계						1,080
지자체 지원금	120	120	120	120	-	480
청년 적립금	매달 20만원(총 24회)					480
결혼 축하금	만기 시 결혼 여부 확인					120

□ 지급방법

○ (만기)

- 만기 후 지원금 지급요건(동일기업 근속 및 거주지 유지 등) 확인을 위한 서류* 제출 후 요건 충족 시 수령 가능

* 지원금 신청서, 주민등록초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금융교육 수료증, 통장사본 등

- 최종 지급대상자 선정 후 만기적립금(960만원+이자)+축하금(120만원) 지급

※ 결혼축하금: 만기 시 결혼 여부 확인 후 120만원 지급

- 단, 중앙부처·타시군 등에서 진행하는 유사 사업*과 중복성 검토 후 지급

* 결혼축하금, 혼수비 지원 등

- 가입자 간 결혼 시 1인당 60만원씩 지급

○ (중도해지) 적금 가입 후 재직기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

※ 중도해지 및 특별해지 사유

중도해지 사유	비 고
① 자발적 약정해지 요청(이직 등)	본인 원에 의함
② 연속 3개월 이상 또는 총 6회 이상 미납	지자체 직권해지
③ 제출서류에 허위사실(부정수급), 자격요건 변동이 확인되는 경우	지자체 직권해지
④ 본인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	특별해지
⑤ 해당기업 귀책사유(폐업, 부도 해산, 권고사직, 사업장 소재지 이전 등)	특별해지

- ※ 중도해지 시 지원금 발생이자는 지자체에 귀속
- ※ 가입기간 1개월 미만 및 만원 미만 절사
- ※ ① 자발적 약정해지 요청(이직 등)할 경우 재직기간별 지원금 지급
- ※ ② 연속 3개월 이상 또는 총 6회 이상 미납할 경우 적금 가입 후 재직기간에서 청년
본인부담금 미납부 월수 공제 후 지원금 지급
- ※ ③ 제출서류에 허위사실(부정수급 등)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지급
- ※ 특별해지 시(④, ⑤) 적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원금 지급

○ 재직기간별 지자체 지원금 지급방식

적금 가입 후 재직기간	1~12개월	13개월 이상 ~ 18개월 이하	19개월 이상 ~ 21개월 이하	22개월 이상 ~ 23개월 이하	24개월 이상
청년근로자 납입조건			적금 가입 후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회차만큼 납입		24회 납입
지자체 지원금	지원금 미지급	지원금 미지급	지원금 50% (240만원)	지원금 80% (384만원)	지원금 100% (480만원+이자)
청년 적립금	본인 납부 누계액 + 그간 이자				
	중도해지				
					만기해지

※ 적금 가입 후 재직기간, 청년근로자 납입조건 2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
해지 시 지자체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지급 가능

V 금융교육 이수

□ 필수 금융교육

- (대상) 참여청년 47명
- (내용) 기본 금융지식, 금융사기 대처(예방)법 등
- (방법)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또는 금융감독원 e-금융교육
센터 등을 통한 온라인 강의 수료
- (수료확인) 만기해지 대상자 서류 제출 시 수료증 제출
 - ※ 금융교육 미수료 시 지원금 지급 불가
 - ※ 교육과정 및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

VI 신청자 유의사항

- ☐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,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
- ☐ 공고 및 기준 등의 미숙지, 제출서류 미비,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음
- ☐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기를 바라며,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- ☐ 접수 마감일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, 마감시간 전 미리 여유있게 제출 바람
- ☐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지원금 환수
- ☐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하며, 불응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음
- ☐ 선정 후 근속 및 거주지 유지 확인을 위한 자료,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음
- ☐ 근로자 적립금 미납으로 인한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음
- ☐ 사업 참여자 개인이 납입계좌 직접 조회는 불가능하며, 진흥원 사업 담당자를 통해 납입금 조회 가능
- ☐ 사업 신청 방법은 자주 하는 질문(FAQ)을 확인 후 제출 바람

VI 문의처

- ☐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
 - (주소)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
 - (전화) 054-470-8567
 - (메일) noflaw@gepa.kr

- 붙임 1. 자주 하는 질문(FAQ) 1부.
2. 사업 신청서 1부.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활용 동의서 1부.